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3년 9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감소, 전월대 비 0.8% 감소

○ 2013년 9월 생산은 건설업,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1.9%), 의료정밀과 학(13.7%)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9.5%), 기타운송장비(-17.5%), 기계장비(-10.8%) 등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3.7%(전월대비 2.3% 감소)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8.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4.6%), 숙박·음식점(2.6%)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금융·보험업(-2.9%), 도소매업(-1.9%), 운수(-3.7%)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3%(전월대비 0.3% 증가) 감소함.

○ 2013년 9월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5%, 9.1%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1%), 화장품 등 비내구재(0.5%)는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7.5%)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1.5% (전월대비 2.0% 감소) 감소함.

－ 설비투자는 정밀기기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9.1%(전월대비 4.1% 감소) 감소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6.5% 증가하였고, 건설기성(경상)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함. 건설수주(경상)는 철도, 사무실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신규주택, 재건축 주택 등에서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함.

- 2013년 9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0.1p, 0.2p 하락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비농림어업취업자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1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구인구직비율,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2p 하락함.

◆ 2013년 3사분기 생산과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1%, 0.6% 증가한 반면 투자는 4.7% 감소

- 2013년 3사분기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1%(전분기대비 0.2% 증가) 증가함.
- 소매판매액지수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는 감소하였으나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늘어 전년동기대비 0.6%(전분기대비 1.2% 증가) 증가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줄어 전년동기대비 4.7%(전분기대비 0.5% 증가) 감소함.

◆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생활물가지수 0.3% 하락)

-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3%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여 지난달에 비해 0.1%p 하락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교통(-1.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3%), 기타상품 및 서비스(-0.3%), 통신(-0.1%) 부문만 하락하였고,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3.1%), 의류 및 신발(2.9%), 음식 및 숙박(1.4%), 주류 및 담배(1.0%)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함.
 - 2013년 10월 생활물가지수는 106.4를 기록하여 각각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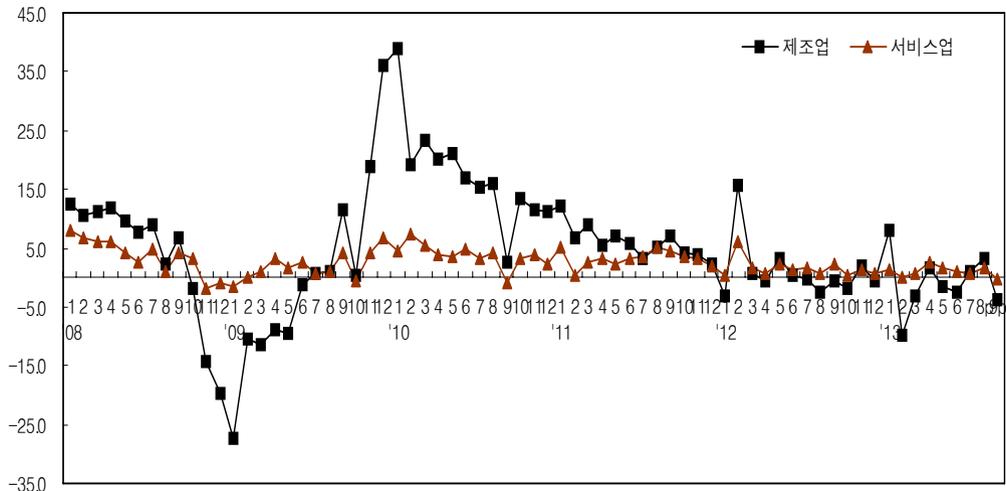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9월	1/4	2/4	3/4p	9월p	
생산	광공업 생산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0.8	-1.7	-0.7	0.1	-3.6(-2.1)
	제조업 생산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0.7	-1.8	-0.8	0.1	-3.7(-2.3)
	출하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0.5	-2.3	-1.0	-0.1	-4.8(-2.7)
	내수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1.9	-2.8	-1.2	-0.4	-4.5(-3.6)
	수출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3.3	-1.7	-0.6	0.2	-5.3(-1.6)
	서비스업생산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2.2	0.8	1.7	0.7	-0.3(0.3)
소비	소비재 판매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2.9	0.2	1.1	0.6	-1.5(-2.0)
투자	설비투자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8.6	-15.4	-10.0	-4.7	-9.1(-4.1)
물가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3.0	2.4	1.6	1.7	2.2	2.1	1.4	1.1	1.2	0.7(-0.3)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물가상승률은 2013년 10월 기준임.
-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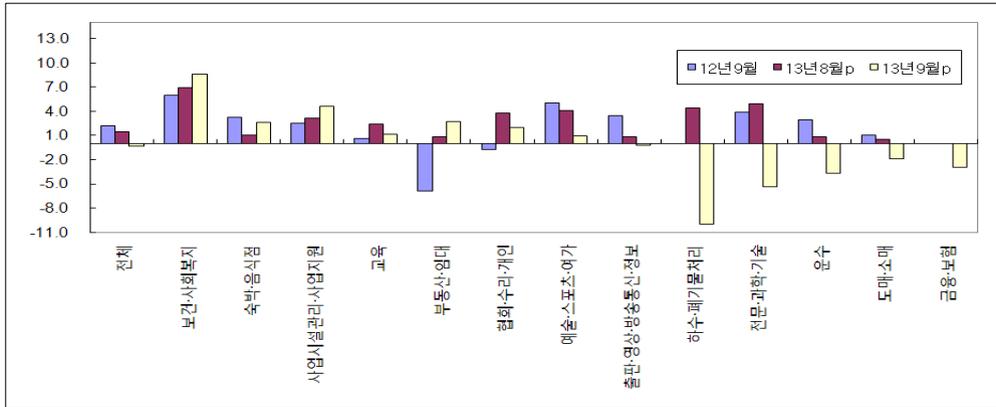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2.11), 『2013년 9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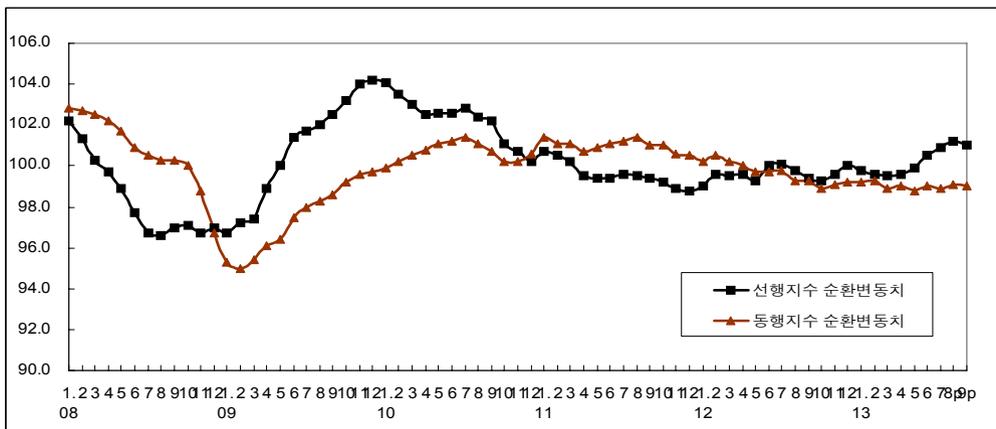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폭 확대

- 2013년 10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26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2천 명(1.9%) 증가함.
 -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228천 명으로 201천 명(1.3%) 증가하였고, 여성은 11,040천 명으로 281천 명(2.6%) 증가함.

- 2013년 10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8%)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51.2%)은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함(그림 4 좌측 참조).
- 2013년 10월 중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남성 고용률은 71.6%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성 고용률은 49.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함(그림 4 우측 참조).
- 2013년 10월 중 취업자는 25,5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6천 명(1.9%)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77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7천 명(1.3%)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76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9천 명(2.8%) 증가함(그림 5 참조).
- 2013년 10월 중 실업자는 72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0.8%)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남성 실업자는 4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 명(3.1%)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2.8%)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이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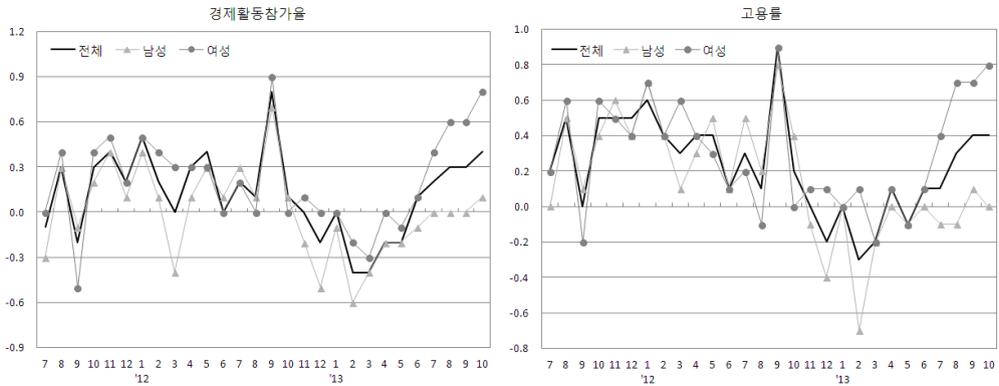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9월	10월
경제활동인구	24,873 (1.6)	25,844 (1.6)	25,760 (1.9)	25,526 (1.3)	25,787 (1.5)	25,091 (0.9)	26,138 (1.1)	26,187 (1.7)	26,187 (1.7)	26,268 (1.9)
참가율	60.1	62.3	61.8	61.1	61.8	59.9	62.2	62.1	62.1	62.2
취업자	23,927 (2.0)	25,003 (1.8)	24,989 (2.1)	24,804 (1.4)	25,069 (1.6)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466 (1.9)	25,545 (1.9)
고용률	57.8	60.2	60.0	59.4	60.1	57.7	60.2	60.3	60.4	60.5
실업자	947	841	770	722	718	907	812	777	720	724
실업률	3.8	3.3	3.0	2.8	2.8	3.6	3.1	3.0	2.7	2.8
비경제활동인구	16,495 (0.6)	15,669 (0.7)	15,904 (0.4)	16,258 (1.5)	15,943 (1.2)	16,831 (2.0)	15,911 (1.5)	15,982 (0.5)	16,008 (0.4)	15,949 (0.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3. 11), 『2013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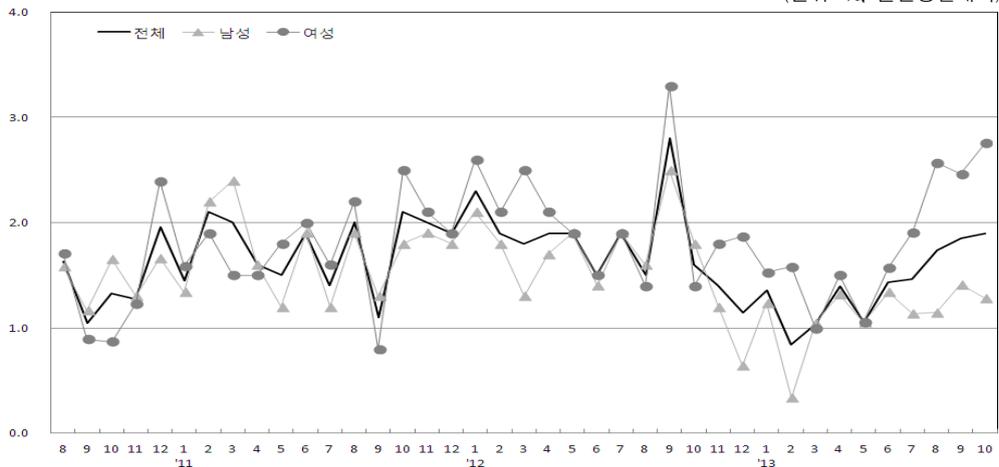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3년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0.0%)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1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천 명(1.0%)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 명(-0.5%)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천 명 감소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천 명(4.4%) 증가함.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 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381천 명으로 22천 명(-0.5%) 감소함.

◆ 건설업 외의 전 산업 취업자 증가

○ 2013년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농림어업(15천 명, 0.8%), 제조업(31천 명, 0.7%),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93천 명, 1.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6천 명, 3.6%), 전기·운수·통신·금융업(36천 명, 1.2%) 등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건설업(-14천 명, -0.8%)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산업	23,927 (2.0)	25,003 (1.8)	24,989 (2.1)	24,804 (1.4)	25,069 (1.6)	23,927 (2.0)	25,003 (1.8)	24,989 (2.1)	25,466 (1.9)
농림어업	1,176 (-2.6)	1,713 (-1.4)	1,706 (0.1)	1,518 (-0.2)	1,738 (-1.1)	1,176 (-2.6)	1,713 (-1.4)	1,706 (0.1)	1,737 (1.5)	1,753 (0.8)
제조업	4,037 (-2.5)	4,061 (-1.6)	4,126 (2.1)	4,196 (3.5)	4,188 (3.6)	4,037 (-2.5)	4,061 (-1.6)	4,126 (2.1)	4,174 (0.5)	4,218 (0.7)
건설업	1,721 (4.8)	1,807 (1.9)	1,772 (0.9)	1,792 (-2.2)	1,818 (-0.1)	1,721 (4.8)	1,807 (1.9)	1,772 (0.9)	1,788 (0.4)	1,804 (-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71 (1.8)	5,596 (2.6)	5,610 (2.1)	5,603 (1.1)	5,592 (1.4)	5,571 (1.8)	5,596 (2.6)	5,610 (2.1)	5,657 (1.3)	5,684 (1.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398 (3.7)	8,820 (3.4)	8,772 (3.5)	8,682 (2.3)	8,718 (2.3)	8,398 (3.7)	8,820 (3.4)	8,772 (3.5)	9,020 (2.9)	9,033 (3.6)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11 (4.5)	2,991 (2.0)	2,990 (-0.4)	2,998 (-0.4)	3,000 (0.0)	3,011 (4.5)	2,991 (2.0)	2,990 (-0.4)	3,075 (2.8)	3,036 (1.2)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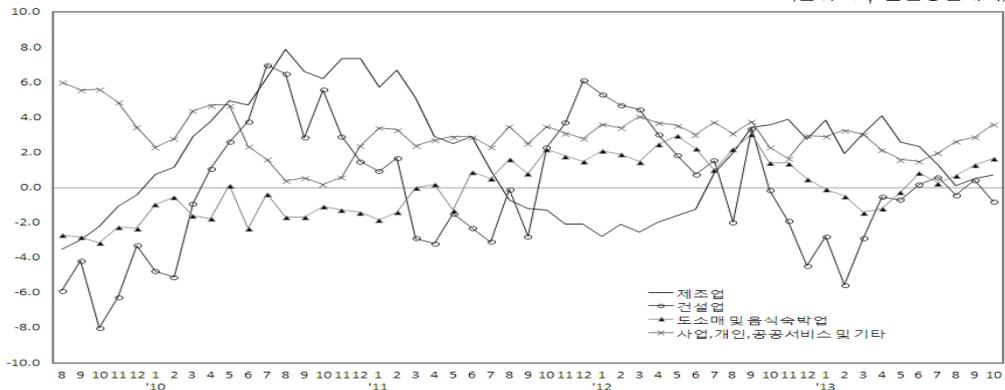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표준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3. 11), 『2013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직 증가 지속

○ 2013년 10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56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5천 명(-0.8%)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8,4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1천 명(3.0%)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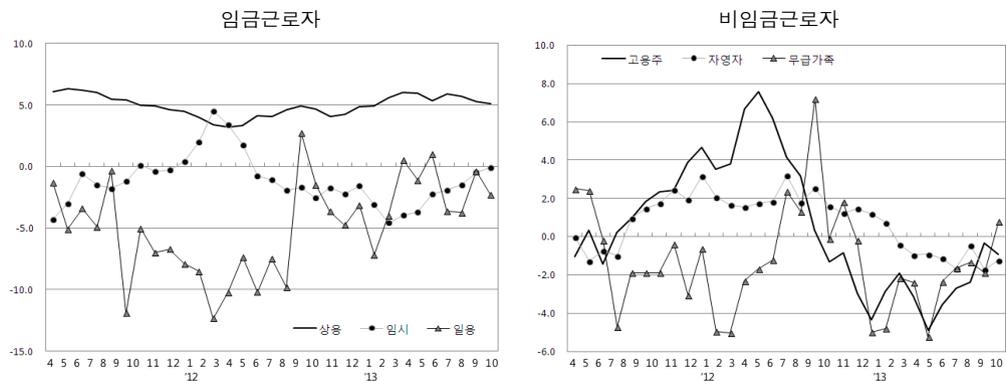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10월	201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0월
전 체	23,927 (2.0)	25,003 (1.8)	24,989 (2.1)	24,804 (1.4)	25,069 (1.6)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466 (1.9)	25,545 (1.9)
비임금근로자	6,650 (1.6)	7,154 (2.1)	7,154 (2.7)	6,917 (0.6)	7,111 (0.6)	6,578 (-1.1)	7,006 (-2.1)	7,049 (-1.5)	7,037 (-1.5)	7,056 (-0.8)
자영업주	5,548 (2.8)	5,830 (3.1)	5,823 (2.5)	5,672 (0.6)	5,779 (0.8)	5,520 (-0.5)	5,726 (-1.8)	5,740 (-1.4)	5,724 (-1.4)	5,713 (-1.1)
무급가족종사자	1,102 (-3.6)	1,324 (-1.8)	1,331 (3.6)	1,245 (0.5)	1,332 (-0.1)	1,059 (-3.9)	1,280 (-3.4)	1,309 (-1.6)	1,508 (-0.3)	1,343 (0.8)
임금근로자	17,277 (2.1)	17,849 (1.6)	17,836 (1.8)	17,887 (1.7)	17,958 (2.0)	17,606 (1.9)	18,320 (2.6)	18,361 (2.9)	18,429 (3.2)	18,489 (3.0)
상용근로자	10,825 (4.0)	11,059 (3.5)	11,216 (4.5)	11,288 (4.3)	11,302 (4.7)	11,379 (5.1)	11,697 (5.8)	11,848 (5.6)	11,888 (5.3)	11,875 (5.1)
임시근로자	4,914 (2.3)	5,114 (1.4)	4,992 (-1.6)	4,933 (-2.2)	4,964 (-2.5)	4,762 (-3.1)	4,945 (-3.3)	4,928 (-1.3)	4,937 (-0.5)	4,961 (-0.1)
일용근로자	1,538 (-9.6)	1,675 (-9.3)	1,627 (-5.2)	1,666 (-3.3)	1,692 (-1.5)	1,465 (-4.8)	1,678 (0.2)	1,585 (-2.6)	1,605 (-0.4)	1,653 (-2.3)
36시간 미만	3,313 (2.1)	3,284 (2.3)	4,722 (-44.2)	3,219 (0.0)	3,137 (0.7)	5,563 (67.9)	4,821 (46.8)	5,083 (7.6)	3,445 (3.5)	3,256 (3.8)
36시간 이상	20,081 (1.7)	21,425 (1.7)	19,770 (28.2)	21,271 (1.6)	21,630 (1.8)	18,099 (-9.9)	20,217 (-5.6)	19,810 (0.2)	21,679 (1.6)	21,995 (1.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3. 11), 『2013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875천 명으로 573천 명(5.1%)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961천 명으로 3천 명(-0.1%) 감소하였으며, 일용근로자 역시 1,653천 명으로 39천 명(-2.3%)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7 좌측 참조).

○ 2013년 10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9천 명(3.8%)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95천 명으로 365천 명(1.7%) 증가함.

◆ 30세 이상 전 연령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하락

○ 2013년 10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7.8%, 0.9%p)에서 상승하였고, 30대(2.6%, -0.1%p), 40대(1.7%, -0.1%p), 50대(1.5%, -0.4%p) 및 60대 이상(1.3%, -0.2%p)에서는 하락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9월	10월			
전 체	947 (3.8)	841 (3.3)	770 (3.0)	722 (2.8)	718 (2.8)	907 (3.6)	812 (3.1)	777 (3.0)	720 (2.7)	724 (2.8)
15~29세	346 (8.2)	341 (8.1)	283 (6.8)	284 (7.0)	276 (6.9)	343 (8.4)	325 (7.9)	328 (7.9)	320 (7.7)	318 (7.8)
30~39세	190 (3.2)	188 (3.2)	166 (2.8)	162 (2.7)	161 (2.7)	195 (3.3)	180 (3.0)	170 (2.9)	146 (2.5)	153 (2.6)
40~49세	164 (2.4)	135 (2.0)	133 (2.0)	122 (1.8)	123 (1.8)	143 (2.1)	146 (2.1)	131 (1.9)	116 (1.7)	116 (1.7)
50~59세	124 (2.3)	112 (2.0)	123 (2.2)	102 (1.8)	106 (1.9)	127 (2.3)	106 (1.8)	106 (1.8)	96 (1.7)	90 (1.5)
60세 이상	124 (4.4)	66 (2.0)	65 (1.9)	52 (1.6)	52 (1.5)	99 (3.4)	56 (1.6)	42 (1.2)	42 (1.2)	47 (1.3)
중졸 이하	187 (4.0)	112 (2.2)	106 (2.1)	98 (2.0)	92 (1.8)	148 (3.3)	101 (2.0)	86 (1.8)	81 (1.6)	75 (1.5)
고졸	408 (4.1)	356 (3.5)	350 (3.4)	321 (3.2)	304 (3.0)	367 (3.7)	341 (3.3)	345 (3.4)	303 (3.0)	324 (3.2)
대졸 이상	352 (3.4)	373 (3.5)	314 (3.0)	303 (2.9)	321 (3.1)	392 (3.7)	370 (3.4)	346 (3.1)	336 (3.0)	325 (2.9)
취업무경험실업자	58	48	36	39	39	61	48	54	52	41
취업유경험실업자	889	793	734	683	679	845	764	723	668	682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3. 11), 『2013년 10월 고용동향』.

- 2013년 10월 중 전체 실업자 724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682천 명으로 3천 명 증가함.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3년 8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4.6% 상승

- 2013년 8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0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878천 원) 4.6% 상승함.
 - 2013년 8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상승한 3,179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해 2,567천 원을 기록하였고,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6.7% 상승하여 181천 원,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2% 상승하여 432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9.4% 상승한 1,416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3년 1~8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68천 원으로 전년동평균(2,942천 원)대비 4.3%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2년 1~8월 평균 대비 4.2% 상승한 3,246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급여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2년 1~8월 평균 대비 4.6%, 초과급여는 0.9%, 특별급여는 3.5%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2년 1~8월 평균 대비 7.4% 상승한 1,379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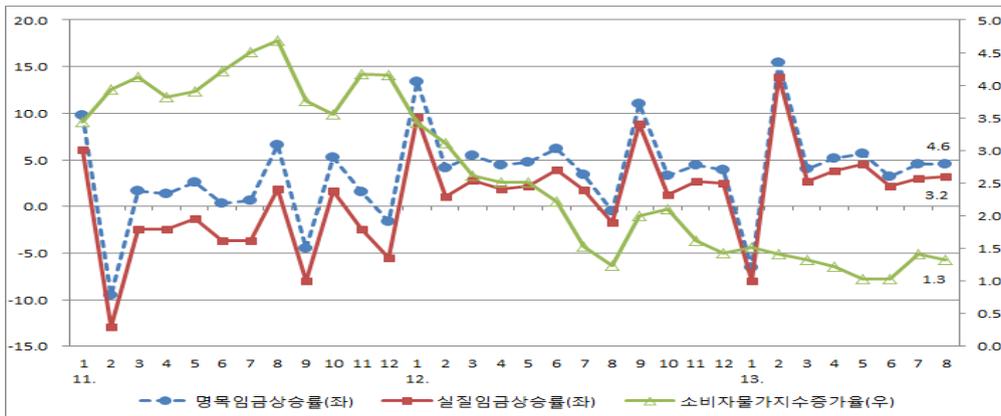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0	2011	2012	2013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16 (6.8)	2,844 (1.0)	2,995 (5.3)	2,942 (5.1)	2,878 (-0.5)	3,068 (4.3)	3,009 (4.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47 (6.4)	3,019 (-0.9)	3,178 (5.3)	3,114 (5.0)	3,040 (-1.1)	3,179 (4.6)	
	정액급여	2,234 (4.5)	2,341 (4.8)	2,470 (5.5)	2,451 (5.7)	2,468 (5.5)	2,564 (4.6)	2,567 (4.0)
	초과급여	196 (12.2)	179 (-8.4)	181 (1.0)	180 (1.9)	170 (-6.0)	182 (0.9)	181 (6.7)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527 (5.8)	482 (2.5)	403 (-27.3)	500 (3.5)	432 (7.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56 (-1.6)	1,215 (15.1)	1,293 (6.4)	1,284 (7.9)	1,294 (4.5)	1,379 (7.4)	1,416 (9.4)	
소비자물가지수	100.0 (2.9)	104.0 (4.0)	106.3 (2.2)	106.0 (2.4)	106.3 (1.2)	107.4 (1.3)	107.7 (1.3)	
실질임금증가율	3.8	-2.9	3.1	2.7	-1.7	3.0	3.2	

주 :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8월 실질임금은 3.2% 상승함.

- 2013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2% 상승함(그림 8 참조).
- 2013년 1~8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2013년 1~8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3.0% 상승함.

◆ 2013년 8월 전 산업에서 임금상승

- 2013년 8월 기준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3년 8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사업서비스업(6.3%), 숙박 및 음식점업(6.2%), 제조업(6.1%), 건설업(5.5%) 등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증가함.
- 2013년 1~8월 평균 기준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2013년 1~8월 평균 기준 임금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건설업(7.0%), 여가 관련 서비스업(6.4%), 사업서비스업(6.0%), 운수업(5.5%), 교육서비스업(5.5%), 제조업(5.3%) 등에서 임금상승이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1~8월		1~8월	
			평균	8월	평균	8월
전 산업	2,844(1.0)	2,995(5.3)	2,942(5.1)	2,878(-0.5)	3,068(4.3)	3,009(4.6)
광업	3,309(10.3)	3,470(4.9)	3,487(6.5)	3,143(5.3)	3,579(2.6)	3,312(5.4)
제조업	3,034(1.6)	3,221(6.1)	3,146(5.7)	3,084(-2.4)	3,312(5.3)	3,273(6.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82(0.5)	5,388(-1.7)	5,003(-0.3)	4,224(1.3)	5,175(3.5)	4,396(4.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88(1.9)	2,654(6.7)	2,570(5.8)	2,623(0.9)	2,683(4.4)	2,732(4.2)
건설업	2,181(12.2)	2,273(4.2)	2,249(3.8)	2,216(3.0)	2,406(7.0)	2,337(5.5)
도매 및 소매업	2,942(6.3)	3,122(6.1)	3,034(6.1)	2,973(-1.3)	3,103(2.3)	3,033(2.0)
운수업	2,393(0.5)	2,589(8.2)	2,542(8.5)	2,617(4.9)	2,682(5.5)	2,690(2.8)
숙박 및 음식점업	1,653(13.0)	1,738(5.2)	1,726(6.3)	1,699(5.3)	1,735(0.5)	1,805(6.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692(9.1)	3,851(4.3)	3,816(4.4)	3,655(3.8)	3,936(3.2)	3,716(1.7)
금융 및 보험업	4,771(1.9)	4,988(4.6)	4,963(4.3)	4,462(-0.8)	5,052(1.8)	4,574(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7(2.6)	2,194(8.8)	2,182(9.8)	2,058(5.8)	2,239(2.6)	2,107(2.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70(-2.2)	4,112(6.3)	3,957(4.8)	3,947(-9.2)	4,095(3.5)	4,158(5.3)
사업서비스업	1,700(-8.0)	1,789(5.3)	1,756(4.9)	1,776(-0.5)	1,862(6.0)	1,888(6.3)
교육서비스업	2,985(-5.4)	3,123(4.6)	3,173(4.5)	3,243(6.0)	3,347(5.5)	3,342(3.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90(-4.0)	2,608(4.7)	2,578(5.9)	2,557(4.9)	2,641(2.5)	2,624(2.6)
여가관련 서비스업	2,130(1.1)	2,211(3.8)	2,154(3.5)	2,062(4.2)	2,292(6.4)	2,185(6.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85(3.9)	2,228(2.0)	2,196(1.2)	2,184(-5.1)	2,210(0.6)	2,2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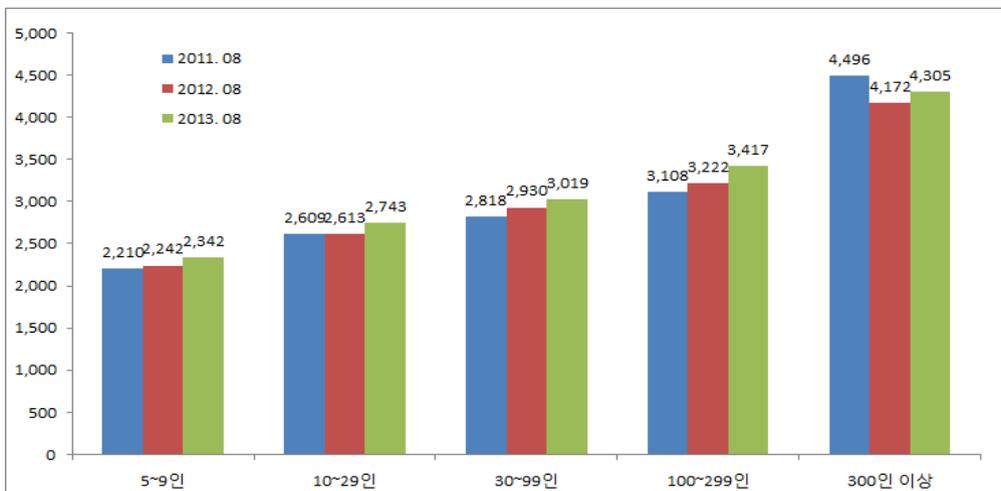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8월 규모별 사업체 모두에서 임금상승률 상승

- 2013년 8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규모별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
 - 2013년 8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86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였고, 이는 정액급여(4.3%), 초과급여(7.5%), 특별급여(6.3%) 모두 증가한 영향임.
 - 한편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4,30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하였고, 이 역시 정액급여(2.5%)와 초과급여(3.5%), 특별급여(5.3%) 모두 증가한 영향임.
- 2013년 1~8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규모별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2,897천 원)은 4.0%로 이는 정액급여(4.5%), 초과급여(2.89%), 특별급여(1.0%) 모두 상승한 영향임.
 - 한편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4,488천 원, 4.3%)은 정액급여(4.7%), 특별급여(5.2%)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 초과급여(-3.6%)는 하락함.
 - 5~299인 규모의 임금총액 상승률은 2012년 1~8월 평균 대비 1.9%p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총액은 높은 상승률로 인해 2012년 1~8월 평균 대비 2.3%p 증가함.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1~8월		1~8월	
				평균	8월	평균	8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19(-0.9)	3,178(5.3)	3,114(5.0)	3,040(-1.1)	3,246(4.2)	3,179(4.6)
	정액급여	2,341(4.8)	2,470(5.5)	2,451(5.7)	2,468(5.5)	2,564(4.6)	2,567(4.0)
	초과급여	179(-8.4)	181(1.0)	180(1.9)	170(-6.0)	182(0.9)	181(6.7)
	특별급여	498(-19.3)	527(5.8)	482(2.5)	403(-27.3)	500(3.5)	432(7.2)
5~299인	비상용임금총액	1,215(15.1)	1,293(6.4)	1,284(7.9)	1,294(4.5)	1,379(7.4)	1,416(9.4)
	상용임금총액	2,675(-0.9)	2,834(5.9)	2,786(5.9)	2,732(2.0)	2,897(4.0)	2,860(4.7)
	정액급여	2,204(5.9)	2,333(5.9)	2,318(6.1)	2,333(5.9)	2,421(4.5)	2,434(4.3)
	초과급여	150(-14.5)	156(3.5)	155(4.1)	150(-2.9)	159(2.8)	161(7.5)
300인 이상	특별급여	321(-27.3)	345(7.7)	313(4.8)	249(-22.2)	316(1.0)	265(6.3)
	비상용임금총액	1,216(14.8)	1,301(7.0)	1,289(8.7)	1,284(5.1)	1,392(8.0)	1,419(10.5)
	상용임금총액	4,273(-0.4)	4,424(3.5)	4,303(2.0)	4,172(-7.2)	4,488(4.3)	4,305(3.2)
	정액급여	2,842(2.3)	2,965(4.3)	2,935(3.9)	2,962(4.9)	3,073(4.7)	3,035(2.5)
300인 이상	초과급여	286(6.7)	275(-3.9)	273(-3.4)	242(-11.8)	263(-3.6)	251(3.5)
	특별급여	1,146(-8.0)	1,185(3.4)	1,096(-1.4)	968(-30.7)	1,152(5.2)	1,019(5.3)
	비상용임금총액	1,208(17.8)	1,209(0.1)	1,228(-0.1)	1,431(-4.1)	1,234(0.5)	1,37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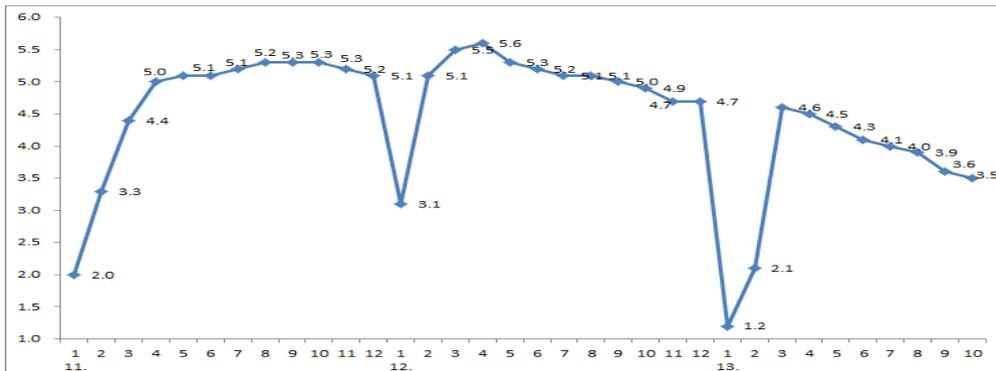
주: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10월 협약임금 인상률 3.5%

○ 2013년 10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5%로 2012년 10월 인상률(4.9%)에 비해 1.4%p 하락함.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3년 8월 근로시간 2.7% 감소

- 2013년 8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7시간(2.7%) 감소함.
 - 2013년 8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69.9시간)은 전년동월(174.6시간)에 비해 4.7시간(2.7%) 감소함(표 9 참조).
 - ※ 월력상 근로일수가 2012년 8월 대비 1일 적은 영향이 반영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4.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3.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함.
- 2013년 1~8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7% 감소함.
 - 2013년 1~8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평균(175.1시간)에 비해 1.3시간(-0.7%) 감소함.
 - 전년동평균대비 월평균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가 동일함에도 월평균 근로시간은 1.3시간 감소함.
 - 2013년 1~8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9.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8% 감소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4.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7% 증가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1~8월 평균		1~8월 평균	
			8월		8월	
전체 근로시간	176.3(-0.2)	174.3(-1.1)	175.1(-0.3)	174.6(-0.9)	173.8(-0.7)	169.9(-2.7)
상용총근로시간	182.1(-1.4)	179.9(-1.2)	180.6(-0.3)	179.3(-1.0)	179.1(-0.8)	174.9(-2.5)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5(0.1)	167.2(-0.8)	167.8(0.0)	167.7(0.4)	166.8(-0.6)	162.6(-3.0)
상용초과근로시간	13.6(-17.1)	12.8(-5.9)	12.9(-4.4)	11.6(-17.1)	12.3(-4.7)	12.3(6.0)
비상용근로시간	122.5(6.2)	122.3(-0.2)	122.1(-0.5)	128.7(-0.5)	124.2(1.7)	123.3(-4.2)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8월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

- 2013년 8월 근로시간은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함.
 - 2013년 8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건설업(146.5시간, -6.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9.4시간, -5.2%), 금융 및 보험업(159.2시간, -4.3%) 등

전 산업에서 2~6%가량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3년 8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88.5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46.5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3년 1~8월 평균 근로시간은 건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

- 2013년 1~8월 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이 큰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6.7시간, -6.3%), 광업(181.5시간, -2.7%), 운수업(178.8, -2.1%), 제조업(185.6시간, -0.7%) 등임.
- 반면 건설업(154.4시간, 1.4%), 여가관련서비스업(158.5시간, 0.3%)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1	2012	2013			
			1~8월		1~8월	
			평균	8월	평균	8월
전 산업	176.3(-0.2)	174.3(-1.1)	175.1(-0.3)	174.6(-0.9)	173.8(-0.7)	169.9(-2.7)
광업	186.9(-0.6)	185.3(-0.9)	186.6(0.0)	188.0(-0.4)	181.5(-2.7)	176.3(-6.2)
제조업	190.6(-0.8)	186.4(-2.2)	186.9(-1.7)	180.5(-3.6)	185.6(-0.7)	179.4(-0.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7.1(0.1)	175.5(-0.9)	176.4(0.2)	178.4(1.4)	175.4(-0.6)	174.0(-2.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6.2(-3.5)	184.8(-0.8)	185.7(-0.1)	185.6(-1.7)	183.6(-1.1)	181.7(-2.1)
건설업	153.9(5.3)	152.5(-0.9)	152.2(-1.4)	156.2(0.5)	154.4(1.4)	146.5(-6.2)
도매 및 소매업	175.1(-1.2)	174.5(-0.3)	174.8(0.3)	175.6(0.8)	174.6(-0.1)	171.1(-2.6)
운수업	181.6(-1.6)	181.7(0.1)	182.6(1.5)	183.4(-2.1)	178.8(-2.1)	177.5(-3.2)
숙박 및 음식점업	186.2(13.7)	186.6(0.2)	188.6(1.1)	189.1(2.2)	176.7(-6.3)	182.4(-3.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5(-1.0)	163.9(-0.4)	164.9(0.7)	168.9(2.4)	164.4(-0.3)	162.7(-3.7)
금융 및 보험업	163.6(-1.0)	163.4(-0.1)	164.2(1.1)	166.4(0.1)	164.0(-0.1)	159.2(-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4.2(-3.1)	193.4(-0.4)	195.0(1.1)	193.3(3.0)	193.1(-1.0)	188.5(-2.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2(-0.1)	165.3(-0.5)	166.2(0.8)	168.1(1.5)	164.9(-0.8)	159.4(-5.2)
사업서비스업	172.1(-4.4)	173.1(0.6)	174.1(2.6)	177.8(2.4)	173.3(-0.5)	171.8(-3.4)
교육서비스업	152.9(2.0)	151.1(-1.2)	153.0(0.3)	158.0(0.3)	152.4(-0.4)	155.6(-1.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3.5(-1.7)	174.8(0.7)	175.5(1.8)	178.4(1.9)	173.8(-1.0)	171.8(-3.7)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1(-1.0)	158.1(0.6)	158.0(0.4)	160.9(-1.2)	158.5(0.3)	158.0(-1.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6(-0.2)	168.9(-2.7)	170.1(-2.6)	170.9(-1.3)	169.6(-0.3)	170.9(0.0)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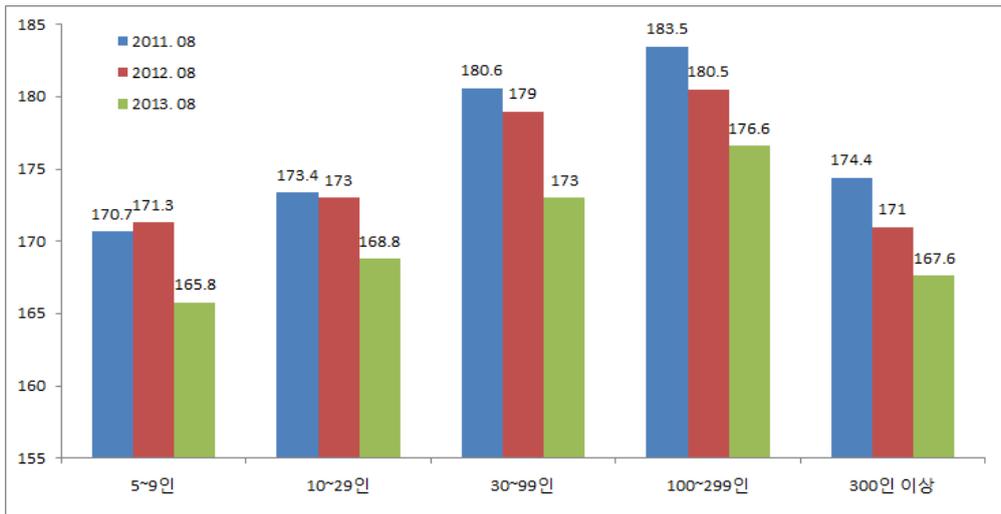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8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3년 8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
 - 세부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2%,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4%,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4%,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2%,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함(그림 11 참조).
- 한편 2013년 1~8월 평균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2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감소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3년 1~8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70.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5%,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1%,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0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8%,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8% 감소한 반면, 10~29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3% 증가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0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616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조정은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조정사건 통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 지난 10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 건수(646건)보다 30건 낮은 수치임.
- 지난 10월 조정성립률 66.4%
 - 지난 10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61.8%)보다 4.6% 높아진 수치임.
 - ※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조정불성립)×100

〈표 11〉 2012, 2013년 10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3. 10	616	580	332	210	122	168	56	112	23	57	36	66.4
2012. 10	646	610	323	142	181	200	70	130	33	54	36	61.8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384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등이 포함됨.
 - 지난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524건)보다 140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약 46%(173건), 기각·각하·취하 비율이 약 54%(206건)를 차지함.

〈표 12〉 2012, 2013년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전체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3. 10	384	379	169	4	45	38	123	0	6
2012. 10	524	510	234	18	76	35	147	0	1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차별시정사건

- 지난 10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건수는 92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차별시정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을 가리킴.
 - 지난 10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81건)보다 11건 증가한 수치임.
 - 처리내역별로는 전부 및 일부 시정 비율이 약 27%(22건), 조정성립 비율이 약 19%(15건)를 차지함.
- *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 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님.

〈표 13〉 2012, 2013년 10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전체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2013. 10	92	81	8	14	10	5	15	0	29	11
2012. 10	81	65	2	4	13	11	11	0	24	1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19일간 실시됨.
 - 전교조·공무원 노조 단결권,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 산업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이 집중 조명됨.
 - 10월 31일에는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가 실시됨.
- 전교조·공무원노조 사태
 - 언론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와 전국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태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감.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이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정 논의는 어렵다고 밝힘.

○ 불법과건 문제

- 현대자동차 불법과건 문제는 4년 연속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짐.
-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는 참고인으로 출석함. 최씨는 복직을 원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단협 적용 불가를 사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힘.
-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업의 대출심사 업무 등 과건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대규모 불법과건이 양산되고 있다고 언급함.

○ 노동부 산하기관 용역계약서 집중 질타

-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하청 및 용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청소용역 표준계약서는 용역업체 또는 종사원의 쟁의행위를 계약해지 사유로 적시함.
-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용역계약서는 하청업체의 인사노무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
- 근로복지공단 안산·태백 산재요양병원의 시방서에는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하더라도 모든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용역회사가 진다는 내용이 포함됨.

○ 국정감사 부실논란

- 올해도 역시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 국감 논란이 제기됨.
-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위해 국감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름.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결정

- 서울행정법원은 11월 13일,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함.
 -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월 24일 전교조가 제기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여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을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힘.

- 재판부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유지되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통보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재판부는 또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힘.

○ 전국교직원노조 1심 판결 때까지 법적 지위 유지

- 이에 따라, 교육부가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전제로 추진했던 △전임자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조치가 잠정적으로 중단됨.
-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 첫 심리는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임.

○ 각계의 반응

- 전교조 측은 “소송의 쟁점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과 해직자 9명의 노조가입으로 6만여 명의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본안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평함.
-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애초에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함.
-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힘.
- 야권은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노동부에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함.
-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함.

◆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예고**

○ 학교비정규직의 규모

- 학교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영역임.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에 따르면, 간접고용(파견, 외주, 도급, 용역 등) 비정규직을 합할 경우 학교비정규직의 규모는 36만 명에 육박함.

〈표 14〉 학교비정규직 현황

		인원수(명)
학교회계직 ¹⁾		140,989
기간제교원		39,401
비정규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5,869
	스포츠강사	11,947
	토요스포츠강사	5,129
	영어회화전문강사	6,105
	교과/특기적성, 방과후강사	131,722
	시간강사	1,424
	소 계	162,196
간접고용(고용노동부 자료) ²⁾		16,781
전 체		359,367

주 : 1) 학교회계직에는 급식(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사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특수, 돌봄, 방과후 유치원 교육/종일반운영, 학부모회, 시설관리, 매점, 사감, 야간당직, 평생교육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학교보안관 등이 포함됨.

2) 고용노동부 조사는 초중등학교(유치원포함) 비정규직의 규모를 약 13만 명(직접고용 약 11만 3천 명, 간접고용 약 1만 7천 명)으로 추산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집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함.

자료 :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의 한 달 월급은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합쳐 133만 7천 원임.
- 조리원, 사무, 행정, 교무, 과학, 특수직종의 1일 임금액은 46,770원(월급기준 107만 원), 조리사, 전산 직종은 49,100원(월급기준 112만 원), 영양사, 사서의 일급은 52,220원(월급기준 158만 원)임.
-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더불어 정규직과 차별적 임금체계의 문제가 심각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입사시기에 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임금체계의 차이에 따라 근속기간 1년당 약 10만 원씩 격차가 발생해 10년 후에는 월 약 10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게 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총파업 예고

- 보도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역별로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함.
- 연대회의의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섭 타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전함.

○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올해 7월, 당·정·청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지속 업무자 1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연대회의는 개별 학교평가에 의해 무기계약직 전환자가 결정될 경우 오히려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스포츠강사 등 4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비판함.

○ 임금협상 난항

- 교육부는 연대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도입(연 3만 원) △식대 지급(월 13만 원) △명절휴가비 지급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상여금(기본급 100%) 요구를 모두 거절함.
-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를 내세우며 임금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음.

○ 지역별 경고파업 실시

-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조들은 10월 17일 전복을 시작으로 서울·경남·제주·세종을 제외한 각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함. 이 가운데 9개 지역에서 조정이 결렬됨.
- 연대회의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서울과 사립학교를 제외한 전국에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함. 3만 6,215명의 투표자 중 93.2%(3만 716명)가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됨.
- 전회련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안명자)는 14일 파업참여 조합원 1천여 명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을 선언함. 경기지부는 전국 공통 요구 사항인 호봉제와 더불어 경기 지역 현안인 △일방 전보금지 △교원·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재량휴업일 유급화 △급식실 위험수당 등 직무수당 도입 △직종통합 금지 등을 요구함.
- 15일에는 전회련본부 충북지부 조합원 600여 명과 전회련 전국 간부 1,000여 명이 경고파업에 나섬.
-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섭태도를 감안해 추후 쟁의행위의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삼성전자서비스 수리 기사 사망

-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노동자 최중범(32) 씨가 10월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됨.
 - 최중범 씨는 30일 SNS를 통해 동료들에게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 배

- 고과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라고 전함.
- 최씨의 동료들은 그가 저임금, 감정노동, 실적압박, 노조원 표적감사에 시달려 왔다고 전함.

○ ‘삼성자본에 의해 타살된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 발족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투쟁을 선언함.
- 대책위원회는 최종범 씨의 명예회복과 유족보상, 삼성그룹·삼성전자서비스 차원의 공개사과, 표적감사 중단,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생계비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 등을 촉구함.
- 민주노총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단체교섭을 지연하고 표적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함. 아울러, 향후 삼성전자서비스의 태도에 따라 투쟁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힘.

◆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 철도노조, 수서발 KTX 출자 승인 시 총파업 돌입 계획

-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거세게 반발하며 코레일 이사회가 주식회사 출자 승인을 하게 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승인하고, 국토부가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됨.
- 철도노조는 11월 20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 노조는 철도노동자 총파업 투쟁으로 철도분할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함.

◆ 국립대병원 갈등과 배경

○ 10월 23일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11월 5일부터 업무에 복귀함.

- 노사는 임금 정률 1.3% 인상, 위험수당 월 3만 원 인상, 가계보조수당 지급에 합의함.
- 아울러 △내년 내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긍정적 검토 △외래환자 수 적정 유지 △선택진료 운영개선책 마련 △비급여 항목 게시 및 안내 △무기계약직 중 100명 이사회 승인 후 정규직 전환 등의 조항에 합의함.
-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국립대병원들이 무리하게 병상을 확대하여 인력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총정원제를 근거로 인력을 통제하고,

본연의 임무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보건의료산업 장시간 노동실태와 해법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1일 평균 병원 체류시간은 9.62시간인 반면, 취침시간을 포함한 개인시간은 8.5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산업의 정규직 전일제를 주3일 9시간 근무, 주4일 8시간 근무 등 다양한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하면 근로시간단축·일생활 균형·고용창출의 여지가 커지며, 국내 간호사의 30%를 시간제로 전환하면 보건의료 부문에서 1만 3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산함.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개인의 선택권을 전제로 논의해야 되며,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정규직 풀타임이 쪼개지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946곳 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지난 8.1부터 9.30까지 연소자,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을 중심으로 946곳을 선정,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감독 결과, 작년 같은 기간 감독 대비 법 위반율은 6.1p%('12년 91.7% → '13년 85.6%), 업체당 위반건수는 0.8건('12년 4.4건 → '13년 3.6건)으로 각각 감소했고, 금품채불도 234백만 원 감소('12년 432백만 원 → '13년 198백만 원)함.
- 그러나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883건(810곳)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업체의 위반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위반사항에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최저임금 미주지,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임금 정기 미지급 등이 포함됨.
-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노동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알바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음. **KLI**

(송민수,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